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33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43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1.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제한(안 제39조)	3

I.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43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 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3. 12.

다. 회 부 일 : 2026. 3.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등).

II. 검토의견

1.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안 제39조)

현 행	박민규의원안
○ 입찰 제한 사유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신설> ○ 입찰 제한 효력 연동 <신 설>	○ 입찰 제한 사유 확대(제39조 제2항)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u>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음</u> ○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용 범위 당연 확장(제39조 제3항 신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포함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제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 제한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공입찰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은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주로 공공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계약질서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등은 직접적인 제한 사유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²⁾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기업의 장에게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주에 대해 발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재 요청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계약 관련 제재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재기간을 3년 이내로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대상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로서, 계약상 의무 위반 등 공공분야의 제재 사유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제재기간을 확대하여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동 규정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공공계약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공공입찰 제한 사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제재 범위의 외연 확대에 해당하므로, 제재의 관련성 및 비례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인과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말소·영업정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적용 가능한 점은 개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할 측면이 있음.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규정 현황]

법 명	조 항	처 벌 내 용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 제7조 제15조	· (책임자)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법인) 10억원이하 벌금 · 손해액의 5배 범위내 배상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건설산업 기본법	제93조 제98조	· (행위자) 3년이상 징역 ·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시 5년이하 금고, 2천이하 벌금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행정처분규정 현황]

구분	적용 법령	처분내용	근거규정
영업 정지	건산법	▶ 영업정지(고의·중과실로 부실시공 + 주요부분 중대손고) - 공사 참여자 5명이상 사망 : 1년	제82조 제2항제5호 (시행령 [별표6])
	산안법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인 이상 사망하거나, 안전·보건 시정조치 명령 위반으로 근로자가 업무로 사망시, 국토부장관에게 영업정지 요청 가능	제159조 제1항
		▶ 영업정지(산안법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영업정지 요청한 경우) - 10명이상 사망 : 5개월 - 6~9명 사망 : 4개월 - 2~5명 사망 : 3개월	제82조 제1항제7호 (시행령 [별표6])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국가 계약법	▶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10명이상 사망 : 2년 - 6~9명 사망 : 1년 6개월 - 2~5명 사망 : 1년	법 제27조제1항제8호 영 제76조제1항 규칙 [별표2]
	지방 계약법	▶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10명이상 사망 : 1년5개월 이상 1년7개월 미만 - 6~9명 사망 :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 2~5명 사망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법 제31조제1항제9호 영 제92조제2항제3호 규칙 [별표2]
부실 벌점	건설기술 진흥법	▶ 부실벌점 부과 - 중대한 건설사고(3인이상 사망) 발생시 벌점 3점 → 공공공사 입·낙찰시 신인도 평가에 활용 (PQ 최대 -5점 감점) → 합산벌점 3점부터 선분양(입주자모집시기) 제한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한편, 개정안은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³⁾ 또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9.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상호 연계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전반에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39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으로는 현행법 제39조제3항⁵⁾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⁶⁾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⁷⁾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에서 별도의 처분 없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입찰참가 제한 관련 법령 비교]

공운법§39	국가계약법§27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u>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u>(단서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기획재정부령*</u>으로 정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u>,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u>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u>」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4항⁸⁾은 다른 법률(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

8)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더라도 그 제한 기간 동안 지자체 입찰 참가 자격을 자동으로 제한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확장 효력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업의 영업활동 및 입찰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국가계약에도 미치도록 하는 내용(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3항에서 규정 중)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4,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상호 연계에 관한 입법정책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중대재해의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은 별도의 규정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효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확장효에 관한 입법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체에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대한건설협회는 제재 효력의 당연확장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포괄적인 제재 범위로 인한 과잉처벌이 우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확대 및 기간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및 타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과의 중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이미 형사

적·행정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어 이중 제재 우려가 있고, 민자사업 및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연계하여 적용할 경우 제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됨에 따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박민규의원안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략)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2년(「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